

인종주의의 장벽 아래에서 결혼하기: 해방 이후 주한미군 내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한인 여성의 결혼

송 하 연*

목 차

- I. 머리말
- II. 해방 이후 주한미군 구성원들의 결혼 양상
- III. 인종 간 금혼의 대안: 동일 종족의 국제결혼
- IV. 맺음말

국문초록 | 그동안 1945~1948년 미군정기의 결혼 양상은 이후 미군과 한인 여성 간 결혼의 초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1947년 전쟁신부법 개정 직후 1948~1949년에 생산된 혼인보고서 등 53건의 주한미군의 결혼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주한미군 내 한국계 미국인들만이 한인 여성과 결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군정기 국제결혼은 사실상 '동일 종족의 결혼' 형태였던 것이다. 반아시아적 편견의 만연, 짐 크로우 체제와 같은 법적, 문화적 장애로 결혼 상대를 찾기 힘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으로서 한국에 주둔하는 기간 동안 한인 여성과 만나 결혼하였다. 그러나 이 결혼은 한인 여성의 미국으로의 입국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주 이후 국민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기까지는 1952년 이민법의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한국

* 宋河衍,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for6083@ewhain.net
투고일: 2022. 04. 28. 심사완료일: 2022. 06. 17. 게재확정일: 2022. 06. 2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2..349>

계 미국인과 한인 여성의 결혼은 미국의 인종주의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은 인종주의의 장벽을 극복하거나 넘으려 하지 않았다. 인종주의는 동일 종족의 결혼 양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내재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핵심어 | 한국계 미국인, 한인 여성, 국제결혼, 주한미군, 인종주의

I. 머리말

“미국에 존재하는 인종주의의 장벽(racial barriers)으로 인하여, 조지 김(사병)이 자신의 배우자로 미국인이면서 백인 여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매우 진중하고 객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¹⁾

1949년 2월 12일 주한미군 내에 제출된 결혼허가신청에 대한 군목의 추천서의 한 대목이다. 이 추천서에서 주한미군의 군목 미첼 필립(Mitchell W. Phillips)은 주한미군의 일반사병이었던 조지 김(George Kim)이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미국 내에서는 결혼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한인 여성 임원규(Won Kyu Lim)와의 결혼을 승인해야한다고 쓰고 있다. 조지 김과 같은 한국계 미국인 앞에 놓여있던 ‘인종주의적 장벽’이란 무엇일까?

인종주의란 타자의 ‘행위’가 아니라 ‘속성’에 근거해 타자를 분류하고, 측정하고, 가치 매기고, 증오하고, 심지어 말살하는 서양 근대의 이데올로기다.²⁾ 미국의 인종주의적 장벽은 백인이 아닌 비주류 종족에게 세워진 견고한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very weighty objective opinion can be added that very likely it will be difficult for George Kim (Enl) to find American, White girl for a spouse, because of existing racial barriers in Americ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Marry”(1949.2.12.),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벽이었다. 미국의 인종주의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1920년대 미국은 자국으로 아시아인이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을 제정하여 일본인의 이민을 제한했던 것이다. 식민지였던 조선도 미국으로의 이민, 즉 귀화가 금지되었다. 다음으로 백인과 비백인의 결혼을 금지하였다. 무려 1965년까지 유효했던 짐 크로우 체제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백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세계 각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종전을 전후하여 주둔지에서 미군의 구성원들이 현지인과 결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병사들이 한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장벽 때문이었다. 이민법으로 인해 당시 한국인은 미국에 귀화할 수 없었고, 또 미국인과 결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47년 미국의 전쟁신부법(War Brides Act, 1945년 제정)이 개정되면서, 미군의 배우자에 한해 아시아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미군과 주둔지의 현지인의 결혼이 합법적인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자, 한국에서는 미군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여성이 늘어나기 시작했다.³⁾

이렇듯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인종주의의 장벽과 맞닿아 있었다. 미국으로의 결혼이주는 1910년에 시작된 사진신부(Picture-Bride)라는 제도로 시작하는데 1924년 이민법으로 인해 사진신부 제도가 중단되면서 그

2) 염운옥, 『낙인찍힌 몸』, 돌베개, 2019, 6쪽.

3) 1950년대 이후 미군과 결혼하게 된 여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문승숙, 마리아 혼 엮음, 『오버테어-2차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제국과 함께 살아온 삶-』, 그린비, 2017;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 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정미경, 「나쁜 년들의 숨겨진 역사-한국계 미군 아내들의 50년 시집살이」, 『영어영문학연구』 49-호, 2007; 여지연,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미국으로 건너간 군인아내들 이야기』, 삼인, 2007.

이후 한국인의 결혼이주에 관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다.⁴⁾ 1950년대부터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김은경의 연구이다. 김은경은 미군의 아시안 배우자의 입국 허용 과정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해 1952년 이민국적법의 제정에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한인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또 당시 이주하였던 한인 여성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들이 미국의 이민 정책을 통과하기 위해 펼쳤던 나름의 ‘은밀한 연대’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⁵⁾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1945~1948년 미군정기의 결혼 양상은 이후 미군과 한인 여성 간 결혼의 초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미군정기 미군과 한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1900년대 재미한인 남성과 한인 여성의 결혼을 상징하는 사진신부와 1950년대의 본격적 미국 이민 및 주한미군과의 ‘국제결혼’ 사이에 위치한 과도기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계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 이민과 시민권의 부여가 합법화되기까지의 전사(前史)이자 과도기로서 위치할 것이다.⁶⁾

4) 초창기 노동이민은 주로 미혼 남성, 즉 “청년 홀아비”들로 구성됐다. 이들의 혼인과 가정생활을 장려하면서 사진신부 제도가 시작되었다. 사진신부들이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미한인사회가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재미한인의 이주와 재미한인 사회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 기념사업회 편집부 저, 감수 유의영,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한미동포재단,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 기념사업회, 2002; 김원용 저, 손보기 역, 『재미한인 50년사』, 혜안, 2004; 웨인 패터슨 저, 정대화 역,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과 애환의 승리(1903~1973)』, 들녘, 2003; 로버타 장, 웨인 패터슨 저, 이주영 역, 정병준 감수, 『하와이의 한인들: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100년사』, 눈빛, 2008; 로버타 장, 이선주,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4.

5)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 『한국근현대사연구』91, 2019.

6) 김민정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외국 국적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 한 명이 국제이주를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1947년 전쟁신부법 개정 직후 1948~1949년에 생산된 혼인보고서 등 53건의 결혼 관련 서류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장에서는 점령 초기 주한미군의 결혼에 관한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1947년 전쟁신부법의 개정과 한국에 적용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고, 해방 이후 주한미군 구성원들의 결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 장에서는 혼인 보고서에 기재된 결혼 당사자의 인적 정보와 특징을 바탕으로 당시 미군의 한인 여성과의 혼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미군과 한인 여성의 결혼의 초기 형태는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한인 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인종 간 결혼 금지의 대안으로서 동일 종족의 국제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 결혼한 한인 여성들의 이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주요 자료는 필자가 재미한인 무용가인 배용자(裴龍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RG 338 주한미군기록, 하지장군 공식문서철 주한미군 문서철(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중 주한미군의 결혼관련철(Box 69, A.G. 014.36, Marriages), 주한미군의 가게 등 관련철(Box 81, 291 Genealogy & RACC)이다.⁷⁾

한 경우를 말하고, ‘종족간 결혼’은 이민자로서 자기 종족커뮤니티 외부의 사람과 하는 결혼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김민정의 정의를 사용하여 백인-비백인간의 결혼을 ‘종족간 결혼’, 한인-한인간의 결혼을 ‘동일 종족의 결혼’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김민정, 「미국가기와 결혼하기: 하와이 한인 이주여성의 종족간 결혼」, 『가족과 문화』 24-3, 2012)

7) RG 338,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Box 81의 문서들 중 1~103쪽까지는 ‘백인엽등이(Caucasian Foundling)’, ‘부대 내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서류 등 인종(Race) 관련 주제를 제외하고 모두 혼인 관련 서류이다. 이후 104~126쪽까지는 1946년 12월 16~17일 열린 군법위원회(Military

II. 해방 이후 주한미군 구성원들의 결혼 양상

1)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한국계 미국인들의 결혼 환경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재미 한인사회의 남성들은 두 가지 장애에 의해 결혼 상대를 찾는 범위가 매우 협소해졌다. 이들의 결혼을 어렵게 만든 법적, 문화적 장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92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민해 오는 아시아인이 줄어들었다. 1924년 미국은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의 제정으로 일본인의 이민을 제한했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 역시 이민이 제한됐다. 초기 재미한인 사회는 남성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성비가 불균형했고, 한인의 이주가 중단되어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하였다.⁸⁾ 미국의 재미 한인 남성들은 1924년까지 미국으로 들어온 소위 한인 '사진신부'들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1924년의 이민법의 제정으로 사진신부와의 결혼 방식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1924년 이후 아시아계 이민이 금지되면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다른 종족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⁹⁾ 둘째, 미국에서 팽배해 있던 백인우월주의로 인해 재미 한인들은 백인과의 종족 간 결혼이 금지됐다.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가 종식되면서 각 영역에서 인종 분리의 짐 크로우 체제(Jim Crow Law: 1876~1965)가 형성되었다.¹⁰⁾

Commission) 회의 내용과 회의에 참여한 미군 내 법조인 명단이다. 나머지 127~161 쪽은 준군인(quasi military persons)에 대한 대우 관련 문서이다. 사택에 공급되는 음식, 학교, 법적 대우, 사법처리, 특별군법위원회(special military commission)의 구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외에 Box 69에는 1949년의 혼인허가신청서와 보고서가 담겨져 있다. (RG 338,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이외에 미국의 인물과 가계 추적 웹사이트인 'www.ancestry.com'을 통해 출생, 사망, 질병, 출입국, 귀화 관련 기록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8)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2016, 309쪽.

9) 김민정, 앞의 논문, 2012, 104-105쪽.

짐 크로우 체제에 따라 주로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2/3 정도의 미국 주들은 “백인(White)”과 “흑인(Black)” 및 기타 비백인으로 분류된 “인종” 사이의 결혼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계 이민자의 주류를 형성했던 중국인과 일본인은 미국 서부의 인종 간 결혼 금지법에서 “백인(White)”과 결혼할 수 없는 “몽골리안(Mongolian)”으로 주로 분류되었다.¹¹⁾ 그렇다고 해서 백인 외의 타 종족과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하와이를 비롯하여 미주 본토에 만연해 있던 반(反) 아시아적 편견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인들은 자신들의 인종차별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들을 차별했다.¹²⁾ 이러한 종족 간 분열은 동일 종족의 결혼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정리하면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이 금지됨에 따라, 한인사회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기 어려워졌다. 또 짐 크로우 체제로 인해 한인은 타 종족과 결혼할 수 없었다. 때문에 1920년대 후반부터 결혼 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좁아졌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1945년 미국은 전쟁신부법을 제정하여 미군의 유럽 출신 백인 배우자들에 한하여 이민을 허용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미군의 주둔지가 확대되면서, 주둔지의 현지인과 미군의 남성 사병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종적으로 미국 할당제를 크게 위배하지 않는 유럽 배우자를 염두에 둔 것이었을 뿐 아니라 3년간 유효한 한시적인 법이었다.¹³⁾

종전 이후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현지인과의 결혼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1947년 6월에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사 14명이 “영국 독일 불란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있으면서

10) 조지형, 「‘평등’의 언어와 인종차별의 정치」, 『미국사연구』 17, 2003, 148쪽.

11) 권은혜, 「인종간 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미국사연구』 34, 2011, 85쪽.

12) 웨인 패터슨 저, 정대화 역, 2003, 앞의 책, 269쪽.

13) 김은경, 앞의 논문, 2019, 147쪽.

일본 여자와는 결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며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허가해달라고 투서할 정도였다. 그러나 미군측은 “미국의 현재 이민법에 있어서는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 만기된 미 군인에게는 무한정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미군과 일본 여자와의 결혼 결과는 영원한 이별에 이르게 된다.”라고 답변해왔다.¹⁴⁾ 이렇듯 1924년 이민법의 제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은 금지되어 있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도 미군이 주둔지에서 아시아 인과의 결혼 및 군 복무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함께 귀국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미군의 아시안 배우자에게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주한미군에 정식으로 한인 여성과의 결혼을 신청한 미군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 출신 남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인 여성은 아시아인으로서 ‘인종적 부적격 아내’로 분류되었고,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따라서 주한미군 내 한국계 미국인 출신 남성들의 한인 여성과의 결혼 신청도 모두 거절되었다. 여기에서는 1946년의 한국계 미국인의 한인 여성과의 결혼 허가 신청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사례로, 조지 김과 임원규의 결혼 허가 신청이다. 1945년 11월부터 미군정에 배치되어 통역을 맡았던 한국계 미국인 출신 사병(계급은 병장)이었던 조지 김은 1946년 4월 한인 여성 임원규와의 결혼을 요청했다. 조지 김은 1924년 6월 25일생으로 미국 서부의 몬타나주 램지(Ramsay)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1944년 11월 25일부터 1947년 6월 11일까지 징집되었다가, 1947년 10월 30일부터 1952년 5월 29일까지 다시 징집되어 주한 미군에 근무했다.¹⁵⁾ 신부 임원규는 1925년 7월 28일생으로 서울 충정로에서

14) 「왜 日本女子와 結婚 못하는가 星條紙에 美兵投書」, 『조선일보』, 1947.6.5. 2면.

15) Beneficiary Identification Records Locator Subsystem (BIRLS) Death Fil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출처: Ancestry.com.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IRLS Death File, 1850-2010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거주하고 있었다. 조지 김은 1946년 1월에 임원규와 만나 약혼했고, 결혼 허가 요청을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미군 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Korean nationals)과 결혼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한 회람(Circulars of Provision), 즉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⁶⁾

조지 김 외에도 1946년에 한인여성과의 결혼 허가를 신청한 한국계 미국인은 또 있었다. 1946년 2월 27일 헨리 정(Henry C.Y. Chung, 한국 이름은 정진용)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출신의 미군 사병이 한인 여성과의 혼인허가를 신청했다. 헨리 정은 1921년 3월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며, 하와이 해군공창에서 일하던 중 성년이 되어 징집되었다.¹⁷⁾ 1942년 징집명령을 받은 헨리 정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미군의 한반도 이남 주둔이 결정되면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는 인천의 헌병중대 제1임시헌병대대에 소속되었고, 계급은 일병이었다. 헨리 정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서 인천 부평의 애스컴시티 내 제38중대의 군목(Chaplain)을 도와 통역을 맡았다.¹⁸⁾

1946년 5월 1일 주한미군사령부(이하 미군 또는 미군측)는 헨리 정 의 혼인 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헨리 정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5월 4일 인천에서 한인 여성이었던 김란옥(Kim Ryawn Ock)과 결혼식을 치렀다.¹⁹⁾ 1년 뒤 1947년 5월 6일 헨리 정은 재차 허가를

16) "Request Permission to Marry"(1949.2.7.)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p.96.

17) U.S. WWII Draft Cards Young Men, 1940-1947 for Henry Chin Yeng Chung HawaiiALLChu, Wallace-Clarke, John, p.1410.

18)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1.13.),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5.

19)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0.2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요청했고, 1947년 5월 18일 미군측은 역시 승인하지 않았다.²⁰⁾

조지 김과 임원규, 헨리 정과 김란옥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미군 주둔 초기 한인 여성과의 혼인을 신청한 사람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둘째, 헨리 정과 조지 김이 결혼허가를 신청한 1946년에는 미군이 아시아인과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 후 부부의 입국은 물론 이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결혼 신청은 모두 승인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이 금지되었고, 미국 사회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던 짐 크로우 체제로 인해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범위가 현저히 좁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주둔 초기 한인 여성과의 혼인을 신청한 사람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허가 신청은 모두 승인되지 못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인종주의의 장벽을 넘으려 하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결혼하고자 동일 종족인 한인 여성을 찾아 결혼하고자했지만, 미국의 제도권은 그마저도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2) 1947년 전쟁신부법의 개정과 주한미군 내 한국계 미국인의 결혼

1947년 7월 미군의 아시아인 배우자가 증가하자 한국인이나 일본인과 같이 미군의 인종적 부적격 아내(racially inadmissible wives)를 포용하는 수정 법안이 마련되었다.²¹⁾ 애초에 전쟁신부법은 미군의 유럽 배우자를

291 Genealogy & RACC, p.12.

20)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1.18),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6.

21) 김은경, 앞의 논문, 2019, 147쪽.

고려한 조치였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법은 미군의 외국인 아내를 염두에 둔 제한적인 법이었지만, 이는 인종문제를 부각시켰고 기존의 이민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²²⁾ 한국에도 “미국 하원이 미군인의 배우자가 된 조선인과 일인의 신부에 대하여는 할당 이외의 이민으로 미국에 입국을 허가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그들 상원에 회부하였다”며 미군의 아시아 배우자에 한해 비할당 이민이 허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6월, 한인 여성과의 결혼 허가를 신청했던 헨리 정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숨지고 말았다. 헨리 정은 1946년 2월과 1947년 5월에 2번이나 결혼허가를 신청했던 한인 여성 김관옥과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사실이 알려졌다.²⁴⁾ 헨리 정이 죽은 이후 김관옥은 미군 측에 출산을 위해 미군 병원에 입원시켜줄 것과 유족으로서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²⁵⁾ 미군 측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측은 일단 헨리 정이 혼인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 헨리 정은 하와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니, 그의 가족들도 하와이에 있었다.²⁶⁾ 미군 측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은 하와이에 있는 헨리 정이 가족이었다.

22) 김은경, 앞의 논문, 2019, 148쪽.

23) 「美軍人 과結婚한 朝鮮女子移民許可」, 『조선일보』, 1947.6.18. 2면.

24)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1.18.),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6.

25)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0.2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2.

26)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1.13.),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5.

미군측은 1947년 10월 말부터 직접 헨리 정 의 혼인이 유효한 것인지 조사에 나섰다. 먼저 미군측은 헨리 정이 1946년 5월 4일 신부 김란옥의 집에서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음을 확인했다.²⁷⁾ 결혼식에는 많은 한국인이 참석했고, 심지어 헨리 정 의 지인인 미군도 참석했다. 참석한 미국인은 헨리 정 의 상사였고, 그가 있던 인천의 헌병대 소속의 대위(Captain)였다. 결혼식 이후 결혼을 허가받지 못한 헨리 정은 김란옥을 미군 사택이나 부대로 데려갈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김란옥의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헨리 정은 부대와 처갓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1947년 3월 김란옥이 임신을 하게 됐다. 그리고 3개월 뒤 헨리 정이 죽게 된 것이다. 김란옥의 출산은 194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다.²⁸⁾

조사 결과 이들이 한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이른바 국제결혼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랑 헨리 정은 하와이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였고, 따라서 한국에 그의 호적이 없었다. 신부 김란옥은 한국인이었고, 그는 혼인을 신고하고 입적할 신랑의 호적이 없었던 것이다. 미군측은 헨리 정 의 ‘호적이 하와이에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²⁹⁾ 따라서 김란옥은 자신과 정진용의 결혼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던 ‘인천부윤이 발급한 증명서(Certificate by the Mayor

27)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 11. 13),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5.

28)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1.13)”,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5.

29) 문서에는 호적이 ‘hojuk’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wife is a legal citizen of Korea, but that the husband has his “hojuk” (citizenship registration) in Hawaii.”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 11. 1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5.)

of Incheon)’를 제시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이 이들이 혼인이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원했다.³⁰⁾ 김란옥이 입적할 호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시장은 이들의 혼례식이 ‘1946년 5월 4일 10시’에 치러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써주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미군측은 조사를 통해 1947년 11월 18일, 헨리 정과 김란옥의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헨리정과 김란옥이 혼인신고를 하고자 했으며, 이는 적어도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만큼은 결혼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미군측은 비록 헨리정이 상부의 허가 없이 혼인한 것은 징계할 일이지만, 그의 군령 불복종이 혼인 자체를 무효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김란옥은 사망한 헨리 정 of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받았다.³¹⁾

헨리 정과 김란옥의 결혼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은 전쟁신부법 개정의 결과로 추정된다. 이미 7월에 전쟁신부법의 개정에 따라 8월에는 “정동예배당”, 즉 정동제일교회에서 미군과 한인 여성 “10여쌍”의 결혼이 있을 정도였다.³²⁾ 미군의 아시안 배우자의 입국이 가능하였고, 미군과 한인 여성의 결혼 현상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헨리 정 of 결혼허가신청을 소급하여 승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헨리 정 of 죽음과 그의 결혼에 대한 조사 이후, 미군측은 미군의 한인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조건을 도출해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혼인 문화와 일제가 제정해 놓은 법령을 바탕으로 미국의 혼인 법령을 참고했다. 신랑이

30)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0.2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2.

31) “Validity of Korean Marriage”(1947.11.18)”,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6

32) 「美軍과結婚하는 朝鮮女子激増」, 『동아일보』, 1947.8.27. 2면

미국의 법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능력(capacity)을 가진 경우, 한인 여성도 한국에서 비슷한 지위에 있는 경우, 또 한인 여성의 가장(가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들의 혼인 신고가 1912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의거하여 이행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라고 보았다.³³⁾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의 결혼에 관한 관습과 법이 혼용된 결과였다.³⁴⁾ 본래 미군 내에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신랑의 재산, 증인 및 군목의 추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보고하여 상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 혼인보고서(Report of Marriage)를 제출하였다. 한인여성과의 혼인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국의 관습 및 일제의 법적 요건까지 충족시켜야 했다.

전쟁신부법 개정 이후 주한미군은 1948년 한 해 동안 미군과 한인여성의 결혼을 허가하였다.³⁵⁾ 여기에서는 먼저 1948년에 제출된 혼인보고서 38건을 통해 1947년 전쟁신부법 개정 직후 결혼을 승인받았던 사례를 분석해보겠다. 혼인보고서에 기재된 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쟁신부법 개정 직후인

-
- 33) "Requirements for Valid Marriage in Korea"(1947.12.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진용과 김란옥의 경우 김란옥이 입적할 호적이 없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미군 측은 한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한국의 공공기관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47년 전쟁신부법의 수정안이 이 시기 국제결혼과 이민에 관한 한국의 법령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인지 추후 제도적 정비와 변화에 대해 확인해볼 사항이다.
- 34) 그런데 위의 자료는 신랑이 미군 남성으로, 신부는 한인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헨리 정의를 사례를 보면, 신랑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반대로 신랑이 한인, 신부가 미국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신랑이 한인인 경우, 신랑의 호적에 미국인 신부가 입적하고, 신부가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면 결혼이 성사되었던 것인지, 이 역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 35) "Requirements for Valid Marriage in Korea" (1947.12.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3-6.

1948년 주한미군 구성원들의 결혼 양상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다. 물론 38건이 1948년 주한미군 전체의 결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전쟁신부법 개정 직후 주한미군 내 사병들의 결혼 양상을 보여주는 표본 집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 38건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부록>에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주둔지에서의 미군의 결혼이 대부분 자국민 간의 결혼이었다. 38쌍 중 신랑의 국적은 모두 미국인이었고, 신부의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9명), 필리핀(1명), 프랑스(1명)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신부가 한국인인 경우이다. 이를 보아 주둔지에서의 미군의 결혼이 대부분 자국민 간의 결혼이었고, 국제결혼의 추세가 아직 거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랑의 직업이 군인으로 한정된 반면, 여성의 직업은 군무원, 군 종업원, 숙기사 등으로 다양했다. 신랑은 대부분 군인 신분이었다고, 신부 중 군인은 38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제출된 혼인보고서를 바탕으로 신랑과 신부의 미군 내에서의 직업과 지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았다.

<표 1> 1948년 혼인보고서를 제출한 신랑과 신부의 계급 및 직업 분류

신랑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장)	병장	상병	Tec (기술병)	군무원 (DAC)	군목	미상
	1	4	7	1	2	11	1	3	5	2	1
신부	중위	군무원 (DAC)	군 종업원 (Army Hostess)	숙기사	예술가	종합 병원	특별군무대 (Special Service Section)			미상	
	1	16	3	1	1	1	1			14	

<표 1>에서 먼저 신랑의 직업은 군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군인 신분이었다. 계급은 주로 병장과 중위, 대위에 집중되어 있다. 생년월일이 기재된 혼인보

고서에 따르면 1947년 당시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이다. 혼인 적령기였던 이들은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주둔지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신부 중에서 군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위 1명뿐이다. 그 이유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군 내 여군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다. 연번 ㉔ 신부 풀러(Fuller Doris. J) 중위로, 소속은 인천의 제382후송병원(382nd Station Hospital)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주한미군 내에도 군인 업무 외적인 것에 다수의 미국 국적의 여성이 투입되었다. 풀러 중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군 내 군무원(Department of Army Civilian)이었다. 여성 군무원은 군내 행정업무 뿐 아니라 미군정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가했던 것 같다. 일례로 연번 ⑤의 베티 조 오웬(Bettye Jo Owen)과 ㉕르노어 리블리치(Lenore D. Lieblich)는 미군정청 중앙경제위원회(NEB, National Economic Board)에 소속된 군무원이었는데, 르노어의 경우 경제전문가(Economic Analyst)로 확인된다.³⁶⁾ 이 외에 미군 종업원(Army Hostess), 속기사, 예술가 등 미군 내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다. 계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속을 보면 군 종합병원(Gen Hosp), 특별근무대(Special Service Section)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에 온 주한미군 소속의 여성들이 미군 내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³⁷⁾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면, 1947년 전쟁신부법의 개정 직후 주한

3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45, Foreign Service List 1945,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Operations, Publishing and Reproduction Services Division. 미군정청 중앙경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광명, 「미군정기 中央經濟委員會(1946~1948)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참고.

37) 다만 신부가 한국, 필리핀, 프랑스인이거나 미국인이지만 미군 내에서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부의 소속과 직업이 기재되지 않았다. 미군의 소속이나 미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관련 증명서만 제출할 뿐, 이름과 주소 외에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던 것 같다.

미군은 한인 여성과의 결혼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 주한미군은 한국에서의 결혼 성립 요건을 제시했다. 미군은 재산이나 미혼 상태를 증명해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한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관습에 따라 주혼자, 즉 신부측 가부장의 동의를 얻는 동시에 조선민사령에 의거한 혼인신고 과정까지 마쳐야했다. 결혼 성립 요건에 따라 1948년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38건의 혼인보고서를 분석해보면 한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결혼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9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미국인간의 혼인이었다.

Ⅲ. 인종 간 금혼의 대안 : 동일종족의 국제결혼

1) 한국계 미국인의 주한미군 배치와 한국에서의 결혼

여기에서는 38건의 혼인보고서 중에서 한인 여성과 혼인한 경우만 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은 결혼하면서 신랑의 소속인 미군은 물론 미영사관에도 혼인 사실을 신고했고, 미영사관을 통해 이들의 결혼증명서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영사관의 결혼증명서,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 제출한 귀화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인적 정보를 추적하였다.³⁸⁾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38) 미국의 인물과 가계 추적 웹사이트인 'www.ancestry.com'에서 이러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한인 여성과 미군의 혼인보고서에 나타난 인적 정보

연번	결혼 날짜	혼인 당사자	이름	소속 및 주소 (출생지)	계급	미국 귀화 시점	결혼 후 이주지역
1	1948. 1.26.	신랑	Nathaniel P. Hiton.	U.N. 16	군무원 (서울조관 호텔)	하와이 출생	
		신부	Sung Chung Ea (성정애)	서울 (중국 상해 출생)			
2	1948. 2.25.	신랑	Yu, Ki Ok (유기옥)	제207헌병중대	T/5	하와이 출생	하와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신부	Cho, Hi Sun (조희선)	전라남도 나주 출생		1955.7	
3	1948. 3.6.	신랑	Paul A. Tsoy (폴 A. 최)	RCA Com		한국계 러시아인 1943.11 귀화	뉴욕→ 플로리다 오스체올라 키섬미
		신부	Moon Chan Kim (김문찬)	평안남도 진남포 출생			
4	1948. 6.12	신랑	John D. 함	제315정보사령부	Tec 3	하와이 출생	하와이
		신부	Yong Cha Pai (배용자)	서울 남산동 3번가 32-1 (부산 출생)		1958.6	

5	1948. 7.3	신랑	Phillip K. Pyun (필립 K. 편)	미군정청 군우 235 Unit 2	군무원	하와이 출생	하와이→ 캘리포니아 컨
		신부	Bok Goom Kang (강복음)	함경북도 성진 출생			
6	1948. 7.3	신랑	Lee Tae soon (이태순)	제24헌병 범죄조사대	병장	하와이 출생	하와이로 추정
		신부	Kim Ok Cha (김옥자)	부산 초량동 508번지			
7	1948. 4.28	신랑	Jack Chin (잭 진)	제2공병건설단 군우 815	병장		
		신부	Cynthia W. B. Kim (신시아 W. B. 김)	한국 국적			
8	1948. 8.28	신랑	Young Pil Choo (주영필)	제1370헌병중 대	병장	하와이 출생	하와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신부	Eun Bong Lee (이은봉)	서울 북아현동 194번지		1955.3	

9	1948. 10.27	신랑	Soon Choo Kang (강순주)	YFP-1 제11중형항만 군우 6	군무원	하와이 출생	오리건 포틀랜드
		신부	Yoon Soon Kawn (권윤순)	부산 (경기도 출생)		1959.5	

출처: Marriages (Special Binder),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18~103
(영문이름은 원문 그대로 적고, 한글이름을 추정하여 병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신랑과 신부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자. 먼저 신랑의 경우, 한인 여성과의 결혼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주로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미군 내에서의 결혼은 본토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된 듯 인종별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혼인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미군이 한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38건 중 총 9건(약 26%)이다. 이 9건 중 8건이 한인 출신들의 결혼, 즉 동일 종족의 결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결혼은 인종(종족) 간 결혼의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주로 동일 종족의 결혼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49년 초부터는 한인 여성-백인의 혼인 허가신청이 보이지만 승인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혼인하여 출산까지 하는 사례가 발견된다.³⁹⁾

그렇다면 한국계 미국인의 동일 종족의 결혼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1920년대부터 아시아계 이민을 받지 않는 등 반아시아적 편견이 만연해있었고, 짐 크로우 체제로 인해 종족 간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조지 김과 임원규의 결혼 허가를 요청

39) “Marriage of Corporal Nickolas Rossow, RA 20232380”(1949.6.7.),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하는 군목의 추천서에도 “미국에 존재하는 인종주의의 장벽(racial barriers)으로 인하여, 조지 김(사병)이 자신의 배우자로 미국인이면서 백인 여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⁴⁰⁾라는 언급이 있지 않았던가. 주한미군의 군목조차도 한국계 미국인 앞에 놓여 있던 인종주의적 장벽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재미한인들은 자발적으로 미군에 종군하거나, 미국이 징병제를 부활시킴에 따라 징병 대상이 됐다.⁴¹⁾ 종전 이후 미군의 한국 주둔이 결정된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었다. <표 2>의 신랑들은 1942~1946년 사이 징집되었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 경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연번 ② 유기옥은 하와이에서 학교(High school)에 다니면서 웨이터로 일했다. 고교 졸업 후 항공기(aircraft) 기술자로 일하다가 1944년 9월 15일 징집대상이 되었다.⁴²⁾ 연번 ③ 폴 최는 1901년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한 한국계 러시아인이었다. 1933년 8월 뉴욕에서 시드먼(W H Sydeman)에게 고용되어 점원(Clerk)으로

4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very weighty objective opinion can be added that very likely it will be difficult for George Kim (Enl) to find American, White girl for a spouse, because of existing racial barriers in America.”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Marry”(1949.2.12.),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41) 1940년 9월 16일 의무훈련법에 따라 21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이 12개월동안 군 복무를 하게끔 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일본의 진주만 습격에 따라 1941년 미국은 징병 연령과 복무일을 확대하였고, 18세에서 37세 사이의 남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징병제도는 1947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었다. (장경호, 「제2차 세계대전기 미군에 종군한 하와이 한인 2세」, 『역사와 경계』 118, 2021, 121~125쪽.)

42) Electronic Army Serial Number Merged File, ca. 1938 - 1946 (Enlistment Records), World War II Army Enlistment Records, created 6/1/2002 - 9/30/2002, documenting the period ca. 1938 - 1946. - Record Group 64 (출처: <https://aad.archives.gov/aad/>,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일하던 폴 최는 귀화를 신청했다. 1942년 징집명령을 받은 후 귀화 신청이 1943년 9월 승인 되었다.⁴³⁾ 연번 ④ 존 함은 1919년 하와이 오아후섬의 와이파후에서 태어났다. 존 함의 한국 이름은 함동운(John Dong Un Huhm)이다. 1940년 22세에 하와이 히캄 공군 기지(Hickam Field)에 고용되어 일했고,⁴⁴⁾ 1946년 9월에 징집되어 한국에 들어왔다.⁴⁵⁾ 연번 ⑤ 필립 편은 1917년 8월 하와이 푸우네네(Puunene)에서 태어나 오아후섬 와이파후에 정착했다. 필립 편의 한국이름은 편갑수(Philp Kapsoo Pyun)이다. 아버지 편옥포(Ek Po Pyun)의 세탁소에서 일했다. 1940년 10월 징집 대상이 되었고, 1948년 7월 결혼한 것을 보아 그 이전에 징집된 것으로 보인다.⁴⁶⁾ 연번 ⑥ 이태순과 연번 ⑦ 잭 진의 출생 정보와 징집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43) National Archives at St. Louis: St. Louis, Missouri: WWII Draft Registration Cards for New York City, 10/16/1940 - 03/31/1947; Record Group: Records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147 (출처: Ancestry.com. U.S., World War II Draft Cards Young Men, 1940-1947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New York, Index to Petitions for Naturalization filed in New York City, 1792-1989 CITIZENSHIP RECORDS p.1232. (출처: <https://ancestry.com>. New York, U.S., Index to Petitions for Naturalization filed in New York City, 1792-198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44) National Archives at St. Louis: St. Louis, Missouri: WWII Draft Registration Cards for Hawaii, 10/16/1940-03/31/1947; Record Group: Records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147; Box: 48 (출처: Ancestry.com. U.S., World War II Draft Cards Young Men, 1940-1947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45)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U.S. Veterans' Gravesites (출처: Ancestry.com.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U.S., Veterans' Gravesites, ca. 1775-201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46) National Archives at St. Louis: St. Louis, Missouri: WWII Draft Registration Cards for Hawaii, 10/16/1940-03/31/1947; Record Group: Records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147; Box: 101 (출처: Ancestry.com. U.S., World War II Draft Cards Young Men, 1940-1947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없었다. 연번 ⑧ 주영필은 1923년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주상빈(Sang Bin Choo)은 1881년생으로 하와이 노동 이민 1세대였다. 주상빈은 이혼 후 주영필과 5살 어린 동생 주영호(Young Ho Choo)와 함께 살았다. 하와이 해군기지(Naval Station)에서 일했고 성년이 되자 1942년 6월 징집대상이 되었고, 이후 1945년 7월 징집되었다.⁴⁷⁾ 이들은 한국에 미군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인 여성을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된 것 같다. 결국 미군과 한인 여성의 초기 결혼 형태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인종주의적 장벽을 넘지 못한 채 그 아래에서 대안으로서 찾은 동일 종족의 결혼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 2>에서 신랑의 출생지 중에는 유독 하와이가 많다. 신랑 9명 중 8명이 모두 한국계였고, 이 중 6명이 하와이에서 태어난 재미 한인 2세였다. 김민정은 2011년 『하와이 이민 100년사』를 펴낸 이덕희와 인터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하와이 재미 한인 사회의 경우, 1945-48년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 아내에 한해 특별비자를 내주었기 때문에 하와이 한인 2세들은 미군부대로 지원하여 한국에 나가 결혼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⁴⁸⁾ 이렇듯 하와이의 경우 한국계 미국인이 아예 결혼을 목적으로 자원입대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9쌍은 신랑의 한국에서의 임무가 해제되면 신랑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신랑 중 하와이 출신이 많음에 따라 9쌍은 1949년에서 1952년 사이

47) National Archives at St. Louis: St. Louis, Missouri: WWII Draft Registration Cards for Hawaii, 10/16/1940-03/31/1947; Record Group: Records of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147; Box: 22 (출처: Ancestry.com. U.S., World War II Draft Cards Young Men, 1940-1947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U.S. Veterans' Gravesites (출처: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U.S., Veterans' Gravesites, ca.1775-201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48) 김민정, 앞의 논문, 2012, 105쪽.

주로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그 중 2쌍이 이주 후 하와이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연번 ④ 존 함과 배용자는 1948년 6월 서울에서 결혼했고,⁴⁹⁾ 1950년 하와이로 건너갔다.⁵⁰⁾ 연번 ⑥ 이태순과 김옥자도 하와이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50년 5월 서울을 떠나 도쿄로 향했는데, 당시 이태순의 주소지가 호놀룰루(Honolulu) 노스킹가 (North King St.) 609임에 따라 도쿄를 경유하여 하와이가 최종목적지였던 것 같다.⁵¹⁾

한편 9쌍 중 4쌍은 하와이를 거쳐 미주 본토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연번 ② 유기옥은 1948년 7월에 태어난 딸 유형자(Elaine Hyung Ja Yu)와 함께 입무 해제 후 1951년 3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부인 조희선과 고향 하와이로 향하는 배를 탔고, 4월 13일 도착했다.⁵²⁾ 이후 유기옥과 조희선은 미주 본토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다.⁵³⁾

49) "Report of Marriage"(1948.6.15),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p.71~74.

50) Judy Van Dile, *Perspective on Korean Dance*, Middletown, CT: Wesleyan Univ Press, 2001, p.22.

51) The National Archives at Washington, D.C.; Washington, D.C.: Passenger and Crew Manifests of Airplanes and Vessels Arriving at Anchorage, AK.: Record Group Title: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7-2004; Record Group Number: 85 (출처: Ancestry.com. Alaska, U.S., Arriving and Departing Passenger and Crew Manifests, 1906-1963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52)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ashington, D.C.: Index to Passengers, Not Including Filipinos, Arriving at Honolulu, Hawaii, ca. 1900-ca. 1952; Microfilm Series: A3410; Microfilm Roll: 37 (출처: Ancestry.com. Honolulu, Hawaii, U.S., Index to Passengers Arriving, 1900-1952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53) Th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San Bruno, California: NAI Number: 605504; Record Group Title: Records of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1685-2009; Record Group Number: 21 (출처: Ancestry.com. California, U.S., Federal Naturalization Records, 1843-1999 [database on-line],

연번 ⑤ 편필립은 1952년까지 하와이에서 거주하다가 강복음과 함께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캘리포니아 쿤에 정착했다.⁵⁴⁾ 연번 ⑧의 주영필은 1948년 결혼 후 하와이로 돌아왔다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Inglewood)로 이주하여 정착했다.⁵⁵⁾ 연번 ⑨의 강순주는 하와이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오리건 그레שמ(Gresham, Oregon)에서 신부 권윤순이 1959년 귀화를 신청했으며, 2001년 영면했다는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은 오리건에 정착했던 것 같다.⁵⁶⁾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 54)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ashington, D.C.: Series Title: Passenger Lists of Vessels Departing From Honolulu, Hawaii, Compiled 06/1900 - 11/1954; NAI Number: A3510; Record Group Title: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7 - 2004; Record Group Number: RG 85 (출처: Ancestry.com, Honolulu, Hawaii, U.S., Arriving and Departing Passenger and Crew Lists, 1900-195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Find a Grave, database and images, memorial page for Bok Goom Pyun (1920 - 1982), Find a Grave Memorial ID 127676962, citing Hillcrest Memorial Park, Bakersfield, Kern County, California, USA; Maintained by Tiffany. (contributor 48174654) (출처: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127676962> 검색일: 2022년 4월 28일)
- 55) 주영필이 1955년 하와이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탔던 것을 보아 그가 전역 후 하와이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ashington, D.C.: Series Title: Passenger and Crew Lists of Vessels and Airplanes Departing From Honolulu, Hawaii, Compiled 12/1954 - 05/1971; NAI Number: A3574; Record Group Title: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7 - 2004; Record Group Number: RG 85 (출처: Ancestry.com, Honolulu, Hawaii, U.S., Arriving and Departing Passenger and Crew Lists, 1900-195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Voter Registration Lists, Public Record Filings, Historical Residential Records, and Other Household Database Listings.(출처: Ancestry.com, U.S., Public Records Index, 1950-1993, Volume 1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 56) The National Archives at Seattle; Seattle, WA: Petitions For Naturalization:

이렇듯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와 한인 여성과 결혼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자신의 출생지인 하와이를 거쳐 미국 본토로 이주하였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왜 출생지인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해야만 했는가?

한국계 미국인은 비록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인종이라는 측면으로 인해 미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타자로 취급됐다. 결국 이들은 미국의 인종주의의 장벽 안에서 미국으로 한인 여성을 들어오게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자신들이 직접 한국으로 이동하여 결혼하는 나름의 대안을 찾아낸 것이었다.

2) 한인 여성의 미국 이주와 시민권의 취득

다음으로 신부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신부는 주로 당시 서울, 부산 등의 도시에서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에 따르면 신부의 거주지는 주로 서울이나 부산이었고 혼인보고서에 주소지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지를 찾아냈다. 출생지는 중국 상해를 비롯하여 평남 진남포와 함북 성진과 같은 북한 지역,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 그리고 전남 나주와 경기도 일대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해방과 함께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도시로 이주하여 한국계 미국인 출신 미군과 인연을 맺게 된 것 같다.

신부의 학력은 어떠한가? 9명의 신부 모두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연번

Record Group Number: 21 (출처: Ancestry.com. Oregon, U.S., Naturalization Records 1865-1991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Oregon State Library; Oregon Death Indexes, 1971-2008; Reel Title: State of Oregon Death Index; Year Range: 2001-2005 (출처: Ancestry.com. Oregon, U.S., Death Index, 1898-2008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④ 배용자의 경우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배용자는 도쿄의 미다여고(三田女高)를 졸업하고 깃센여자대학(實踐女子大學)에 진학해 가정관리학을 전공했다.⁵⁷⁾ 앞서 언급하였던 조지 김이 1946년 결혼을 신청했던 한인 여성 임원규 역시 당시로서는 고학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임원규는 서울 충정로에서 거주했고,⁵⁸⁾ 서울여자소학교(Seoul Girl's Grade School), 이화고등여학교(Ewha Girl's High School), 세브란스고등간호학교(Severance Nursing College)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서울의 제12의무대(the 12th general medical dispensary)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조지 김과의 결혼식에 추천서를 써준 군목은 임원규가 미국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으며, 영어가 유창하였다고 할 정도였다.⁵⁹⁾

그렇다면 중산층 출신의 한인 여성이 한국계 미국인 출신 미군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덕희에 따르면 미군정기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교육받은 중산층 한인 여성들이 미군장교와 결혼하여 하와이로 온 경우가 종종 있었다.⁶⁰⁾ 연번 ④ 배용자의 사례를 통해 이덕희의 증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배용자는 어릴 때부터 언니 배구자의 영향으로 무용가의 길을 걸었고 배구자악극단의 후계자로 지목됐다. 그런데 1940년

57) 배한라, 「언니, 배구자」, 《춤》 제17호, 1977년 7월, 70쪽; 「하와이의 한국무용학원장 매리 조 프레실리」, 《연합뉴스》 2006. 3. 6.

58) “Request Permission to Marry” (1949.2.7.)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p.96.

59) 임원규가 근무했다는 제12의무대(the 12th general medical dispensary)는 미 24군단 내 의료 관련 부대로 보인다. 세브란스간호학교 출신 여성이 주한미군 내 의료시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아마 여기에서 조지 김과 만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Request Permission to Marry”(1949.2.7.)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p.96.)

60) 김민정, 2012, 「미국가기와 결혼하기: 하와이 한인 이주여성의 종족간 결혼」, 105쪽 (이덕희와 인터뷰(2011년 7월 7일)에서 재인용.)

배구자의 은퇴로 인해 배구자악극단은 완전히 해산하였다. 배구자악극단이라는 후원자이자 소속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용의 길만을 걸어온 배용자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배용자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하와이에서 고학으로 의학 공부를 해서 금의환향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배용자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유학을 목적으로 하와이로 이주하고자 했다. “학생비자로 입국했다가 엄한 출입국 규제에 걸려 캐나다로 쫓겨나기도 했다. “갓은 고생 끝에 재입국은 했으나 의학공부는 고사하고 생계조차 막연했다.”⁶¹⁾

배용자는 어떻게 미국에 ‘재입국’하여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었을까? 한국계 미국인 출신 미군 존 함과의 결혼은 배용자에게 재입국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와이로의 이주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만들었다. 하와이에 정착한 배용자는 호놀룰루에서 ‘한라 배 함 한국무용연구소(Halla Pai Huhm Korean Dance Studio)’를 열었다. “각국의 민족경연대회를 본 다음부터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무용발표회를 가져 꼭 우리의 아름다운 춤을 보여줘야겠다는 일념”으로 “1950년 봄, 단칸셋방 한구석에서 할라 배 무용연구소”를 열었다.⁶²⁾ 조국에서 무용가의 길을 포기해야했던 배용자는 이주 이후 자신의 진로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1947년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신부법의 통과로 미군과 결혼하는 여성이 늘어나자 이들에 대해 도미병(渡美病), 탈선여성, 숭외주의(崇外主義) 같은 부정적 표상이 따라 붙었다.⁶³⁾ 그러나 해방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새로운

61) 「海外에 사는 韓國人 (65) 하와이에 韓國舞蹈 심은 裴漢擘여사 [2], 『경향신문』 1976. 10.19. 3면 (송하연, 「식민지 조선의 저널리즘과 여성의 타자화-무용가 배구자-배용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63, 2021, 277쪽에서 재인용.

62) 위의 자료.

63) 「美軍과結婚하는 朝鮮女子激增」, 『동아일보』, 1947.8.27. 2면; 미군과의 결혼에 대해 군정청 민정장관 안재홍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일종의 숭외주의(崇外主義)인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도의적(道義的)으로 자존심을 갖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할 정도였다. (「公娼廢止豫定대로」, 『경향신문』, 1948.

진로를 모색해야 했던 한인 여성들에게 한국계 미국인과의 혼인 후 미국으로의 이주는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할 기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전쟁신부법은 한인 여성들의 결혼과 미국으로의 ‘입국’은 가능하게 했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은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주사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국가는 국가의 구성원을 공민원(national citizenship)이라는 범주를 통해 관리해 왔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정치적 경계는 외국인, 이방인, 이민자, 난민, 망명인을 ‘외국인(타자)’로 분류해 왔다.⁶⁴⁾ 따라서 본래 한인들은 이민 초기부터 동양계 이민자로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alien ineligible to citizenship)’이었고 1952년 맥캐런 월터법(McCarran-Walter Act)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었다.⁶⁵⁾ 따라서 1947년 전쟁신부법의 개정으로 미군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 1952년이 되기 전까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로 보아, 한인 여성도 동일한 처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⁶⁾ 입국 허용과 함께 비자를 받아 입국 및 외국인으로서 거류만 가능한 것일 뿐,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시민권의 취득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쟁신부법의 개정으로 한인 여성과의 혼인을 허용했던 주한미군은 1949년 3월부터 다시 한인 여성과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다.⁶⁷⁾ 일단 입국은 해도 시민권(Citizenship)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⁶⁸⁾ 전쟁신부법 개정에 따라 미군의 아시안 배우자가 일단 입국

2. 12. 2면.)

64) 황혜성, 「왜 호모 미그란스인가?-이주사의 최근 연구동향과 의미」, 『역사학보』 212, 2011, 21쪽.

65) 김지원, 앞의 논문, 2016, 289쪽.

66) 김은경, 앞의 논문, 2019, 148쪽.

67) 1950년 2월 현재에도 미군-일본여자의 결혼은 금지 상태였다. (「美軍日女와結婚 謁議員許與要請」, 『경향신문』, 1950.2.2. 2면.)

68)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Marry”, (1949.2.1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은 할 수 있지만, 입국 이후에 시민권(Citizenship)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⁶⁹⁾ 이때부터 한국계 미국인-한인여성간의 혼인 뿐 아니라 한인여성-백인의 혼인 허가신청이 보이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이러한 기조는 1951년 이민국적법이 마련되기까지 계속되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하였던 조지 김은 1949년 2월 임원규와의 결혼 허가신청을 재차 시도했지만, 시민권 취득 불가 상태를 이유로 거절됐다. 결국 조지 김은 임원규와의 약혼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⁷⁰⁾

1951년이 되어야 주한미군은 다시 한인 여성과의 결혼을 승인하게 됐다. 1950년 8월에 제정된 외국인 배우자 자녀법(Act on Alien Spouses and Children)은 특별히 한국인 및 일본인 배우자와 자녀를 고려한 법안이었고,⁷¹⁾ 이에 따라 1951년 미 군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타인종간 이뤄진 결혼을 승인했다.⁷²⁾ 이후 1950년대에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이주한 한인 여성들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1952년의 이민과 귀화법

69, A.G. 014.36, Marriages, p.103.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e to the fact that at present time Korean Nationals are not eligible for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create a complicated situation in that the Corporal would not be permitted to take his wife to the United States.”

69)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Marry”, (1949.2.14.),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p.103.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e to the fact that at present time Korean Nationals are not eligible for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create a complicated situation in that the Corporal would not be permitted to take his wife to the United States.”

70) 결국 조지 김은 1952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계 미국인 여성 베티 황(Betty Whang)과 결혼했다. Washington State Archives; Olympia, Washington: Washington Marriage Records, 1854-2013 (Ancestry.com. Washington, U.S., Marriage Records, 1854-2013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71) 김은경, 앞의 논문, 2019, 147쪽.

72) 문승숙, 「육망을 규제하고, 제국을 경영하기-1945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 내 미군의 성매매」 문승숙, 마리아 혼 엮음, 앞의 책, 2017, 122~123쪽.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일명 맥케런 윌터법의 제정으로 1924년의 이민법이 폐지되었다.⁷³⁾ 이로써 “미국의 귀화시민이 되는 사람의 권리는 인종이나 성, 또는 결혼 여부에 의해 거부되거나 침해되지 않는다”로 단순화되었고, 1952년 귀화에 대한 인종적 장벽은 공식적으로 와해되었다. 이제 아시아인들도 인종 자격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미국에의 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⁷⁴⁾ 이제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은 미국으로의 이민이 허용됨은 물론,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1948년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결혼을 허가받아 이주한 한인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주한미군의 우려와 달리 이들은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 <표 2>의 신부들을 살펴보자. 연번 ②의 신부 조희선은 1928년 전라남도 나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유기옥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7월 딸 유형자(Elaine Hyung Ja yu)를 낳았다. 조희선은 남편 유기옥의 성을 따라서 희선 유(Hi Sun Yu)로 이름을 바꾸었다.⁷⁵⁾ 이후 유기옥과 조희선은 하와이를 거쳐 미주 본토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1953년부터 조희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다고 되어있으며, 1955년 7월 조희선이 귀화를 신청하자 남편 유기옥이 증인으로 나섰다. 유기옥은 여전히 미군 소속이었고, 1948년 당시 한국에서 기술병장(T/5)의 계급이었던 그는 1955년 현재 상사(M/Sgt)가 되어 있었다.

73) Masako Nakamura, *Families precede nation and race?: marriage, migration, and integration of Japanese war brides after World War II*, University of Minnesota, Ph.D. dissertation, 2010, p.7.

74) 김연진, 「이민과 귀화, 그리고 미국의 국가정체성-아시아계 이민자의 귀화 청원 관련 인종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9, 2009, 72쪽.

75) The National Archives at San Francisco; San Bruno, California; NAI Number: 605504; Record Group Title: Records of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1685-2009; Record Group Number: 21(출처: Ancestry.com. California, U.S., Federal Naturalization Records, 1843-199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3개월 뒤인 10월 11일 조희선의 귀화가 승인되었다.⁷⁶⁾

연번 ④의 신부 배용자는 192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⁷⁷⁾ 하와이로 건너가면서 이름을 배한라(裴漢拏, Halla Pai)로 바꾸었는데, 남편의 성 함(咸, Huhm)을 따라 'Halla P. Huhm'이 되었다. 한라함(배용자)은 하와이에서 1958년 5월 귀화를 신청했고 6월 승인받았다.⁷⁸⁾

연번 ⑧의 신부 이은봉(Eun Bong Lee)은 192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주영필과 결혼 후 이름을 은봉에서 사식(Sa Sik)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미영사관에 주영필과 이사식으로 혼인이 신고됐다. 이사식은 남편의 성에 따라 주사식(Sa Sik Choo)이 되었다.⁷⁹⁾ 주사식(이은봉)은 하와이에서 1955년

76) The National Archives in Washington, DC; Washington, DC: Index to Naturalization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1852 - Ca. 1989 (M1744); Microfilm Serial: M1744; Microfilm Roll: 163 (출처: Ancestry.com. U.S., Naturalization Record Indexes, 1791-1992 (Indexed in World Archives Project)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22일)

7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ashington, D.C.: Marriage Reports in State Department Decimal Files, 1910-1949;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eries ARC ID: 2555709; Series MLR Number: A1, Entry 3001; Series Box Number: 507; File Number: 133 (출처: Ancestry.com. U.S., Consular Reports of Marriages, 1910-194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78) The National Archives in Washington, DC; Washington, DC: Index to Naturalizations of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Hawaii, 1900-1976 (M2074); Microfilm Serial: M2074; Microfilm Roll: 10 (출처: Ancestry.com. U.S., Naturalization Record Indexes, 1791-1992 (Indexed in World Archives Project)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7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ashington, D.C.: Marriage Reports in State Department Decimal Files, 1910-1949;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eries ARC ID: 2555709; Series MLR Number: A1, Entry 3001; Series Box Number: 537; File Number: 133(출처: Ancestry.com. U.S., Consular Reports of Marriages, 1910-194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Find a Grave,

3월 귀화가 승인됐다.⁸⁰⁾ 이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로 이주하여 정착했다.⁸¹⁾

연번 ⑨의 신부 권윤순 (Yoon Soon Kawn)은 1923년 경기도 일대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살았다. 권윤순은 1951년 마산에서 딸 강순인(Soon In Kang)을 낳았고, 신랑 강순주의 성을 따라 강윤순이 되었다.⁸²⁾ 1954년 미주 본토로 이주한 강윤순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정착하여 1959년 2월 귀화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⁸³⁾ 이들 사례를 보아 1947년 전쟁신부법 개정으로

database and images , memorial page for Young Pil Choo (1 Apr 1923 - 1 Mar 1999), Find a Grave Memorial ID 488769, citing Riverside National Cemetery, Riverside, Riverside County, California, USA ; Maintained by Doug B. (contributor 102) (출처: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488769/young-pil-choo> ,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80) The National Archives in Washington, DC; Washington, DC: Index to Naturalizations of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Hawaii, 1900-1976 (M2074); Microfilm Serial: M2074; Microfilm Roll: 5 (출처: Ancestry.com. U.S., Naturalization Record Indexes, 1791-1992 (Indexed in World Archives Project)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81) Find a Grave, database and images, memorial page for Sa Sik Choo (5 May 1923 - 31 Dec 2012), Find a Grave Memorial ID 103681125, citing Riverside National Cemetery, Riverside, Riverside County, California, USA ; Maintained by God Bless Our Veterans. (contributor 47612119) (출처:<https://www.findagrave.com/memorial/103681125/sa-sik-choo>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82)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Washington, D.C.: Marriage Reports in State Department Decimal Files, 1910-1949;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 - 2002; Series ARC ID: 2555709; Series MLR Number: A1, Entry 3001; Series Box Number: 527; File Number: 133 (출처: Ancestry.com. U.S., Consular Reports of Marriages, 1910-1949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83) The National Archives at Seattle; Seattle, WA; Petitions For Naturalization: Record Group Number: 21 (출처: Ancestry.com. Oregon, U.S., Naturalization Records 1865-1991 [database on-line], 검색일: 2022년 6월 19일)

인해 결혼이 허가됐던 한인 여성들은 이주 직후에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거류하였다. 1952년 이민국적법 통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였고,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됐다.

해방 이후 한인 여성들에게 한국계 미국인과의 혼인 후 미국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인 여성들도 한국계 미국인 남편과 같이 미국의 인종주의 장벽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미국의 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외국인 배우자로 거류하였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과 제도에 있어서 미국의 인종주의 장벽은 곧 허물어졌고, 이들도 이민자로서의 삶을 종료하고 미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시민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IV. 맺음말

해방 이후 주한미군 내 한국계 미국인과 한인 여성의 혼인은 미국의 인종주의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인종적 타자였고, 동일 종족의 결혼을 선택했다. 동시에 이들은 동일 종족의 결혼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 모순적이게도 인종주의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내재화되었던 것 같다. 20세기 초까지 미국 사회에서 한인 간의 결혼은 인종주의적 장벽으로 인해 당연한 것으로, 미군 출신 한국계 미국인이 한인 여성과 결혼하여 돌아온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은 재미한인사회의 초기 일원이자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됐으나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민권의 취득을 이민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민의 목적을 미국에서의 정착, 즉 시민권의 취득으로 본다면, 미군정기에 이주했던 한인 여성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미완의 단계에 있었다. 이 시기가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1948년 당시 이들은 입국이 가능했어도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고 단순히 외국인 거류자로 분류됐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미군정기에 국제결혼을 선택한 11쌍에 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짐 크로우 체제의 성립과 같은 인종주의적 편견의 만연, 전쟁신부법과 이민법의 개정 등 법적 제도의 변화, 그 속에 놓인 개인의 현실을 적고 있는 문서 등을 교차 검토하여 이들이 처해있던 상황과 동족 간 결혼을 선택한 이유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 개별적인 상황은 아마 미국에 살고 있을 후손들을 찾아야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추후 연구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 RG 338, Records of USAFIK,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69, A.G. 014.36, Marriages
-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춤》
- www.ancestry.com

2. 논저

- 권은혜, 「인종간 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미국사연구』 34, 2011.
- 김민정, 「미국가기와 결혼하기: 하와이 한인 이주여성의 종족간 결혼」, 『가족과 문화』 24-3, 2012.
-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 『한국근현대사연구』 91, 2019.
-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 2016.
- 김원용 저, 손보기 역, 『재미한인 50년사』, 해안, 2004.
- 김연진, 「이민과 귀화, 그리고 미국의 국가정체성-아시아계 이민자의 귀화 청원 관련 인종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9, 2009.
- 문승숙, 마리아 혼 엮음, 『오버테어-2차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제국과 함께 살아온 삶-』, 그린비, 2017.
- 박광평, 「미군정기 中央經濟委員會(1946~1948)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 송하연, 「식민지 조선의 저널리즘과 여성의 타자화-무용가 배우자-배용자의 사

- 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63, 2021.
- 염운옥, 『낙인찍힌 몸』, 돌베개, 2019.
- 웨이 패터슨 저, 정대화 역,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과 애환의 승리 (1903~1973)』, 들녘, 2003.
- 장경호, 「제2차 세계대전기 미군에 종군한 하와이 한인 2세」, 『역사와 경계』 118, 2021.
- 조지형, 「'평등'의 언어와 인종차별의 정치」, 『미국사연구』 17, 2003.
- 황혜성, 「왜 호모 미그란스인가?: 이주사의 최근 연구동향과 의미」, 『역사학보』 212, 2011.
- Masako Nakamura, *Families precede nation and race?: marriage, migration, and integration of Japanese war brides after World War II*,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h.D. dissertation, 2010.
- Judy Van Dile, *Perspective on Korean Dance*, Middletown, CT: Wesleyan Univ Press, 2001.

RACIAL BARRIERS TO KOREAN AMERICANS : THE
MARRIAGES OF KOREAN AMERICANS OF USAFIK AND
KOREAN WOMEN IN 1948

SONG HAYEON (SONG, HA YEON)

This study examines that Korean American male soldiers of USAFIK were married to Korean Women in 1948 because of racial barriers. This study delivers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y of these marriages.

The grooms, Korean American male soldiers of USAFIK, didn't try to break down the barrier. But they chose the marriage with the women in the same ethnic group as the alternative when they are in the service of enlistment. The brides, Korean women who were married to Korean Americans, leave their own country for new lives. After getting married, They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They were foreign residents because they had no citizenship. In 1952, at least legally, the walls of racism fell. These women acquired citizenship and were no longer foreigners. And they became a citizen of a national country called the United States.

The cases of these marriages show the impact of racism in the United States on individual lives. They did not try to overcome or overcome racial barriers. Racism is internalized in their mind and life.

Key Words : Korean American, Korean Women, International Marriage, USAFIK, Racism

<부록> 1947년 12월~1948년 12월까지 제출된 미군의 혼인보고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한국계미국인-한인여성의 결혼)

연번	결혼 날짜	혼인 당사자	이름	소속 및 지역	계급	결혼 장소
1	1947. 12.12	신랑	Walter G. Seydewitz	AGD, Hq. XXIV Corps (제24군단 본부 부관부)	Capt(대위)	주한 미대사관
		신부	Dorothy Todd Foster	PIO Hq XXIV Corps (제24군단 본부 PIO)	CAF-10 (군무원)	
2	1948. 1.26.	신랑	Nathaniel P. Hiton.	U.N. 16	군무원 (DAC) (서울조관 호텔)	반도호텔
		신부	Sung Chung Ea	Korean national, Seoul, Korea (한국 국적, 대한민국 서울)		
3	1948. 2.25.	신랑	Yu Ki Ok	207th MP Co. APO 235 (제207헌병중대 군우 235)	T/5	정동 감리교회
		신부	Cho Hi Sun	Korean (한국인)		
4	1948. 2.28.	신랑	Joseph E. Poff	31st Infantry (제31보병연대)	CWO (부관참모)	제31보병연대 예배당
		신부	Frances C. Hope	Civilian Personnel Office XXIV Corps APO 235 (제24군단 인사과 군우 235)	CAF-5 DAC (군무원)	

5	1948. 3.13.	신랑	James S. Fields	Headquarters Company 2d Engineer Construction Group APO 815 (제2공병건설단 군우 815)	T/Sgt (병장)	정동 감리교회
		신부	Bettye Jo Owen	NEB, USAMGIK, APO 235 Unit 2 (미 군정청 중앙경제위원회 군우 235 Unit 2)	DAC (군무원)	
6	1948. 3.12.	신랑	Eugene P. Pecor	Headquarters 1st FA Bn APO 6 Unit 4 (제1야전포병연대 군우 6 Unit 4)	C.W.O. (부관참모)	마산, 한국
		신부	Delores Staggers	Special Service Section, Hq 6th Inf Div (제6보병사단 본부 특별근무대)	Army Hostess SP-6 (군 종업원)	
7	1948. 3.6.	신랑	Paul A. Tsoy	RCA Com (Radio Corporation of America)		정동 감리교회
		신부	Moon Chan Kim	한국		
8	1948. 3.27	신랑	Douglas Broderick	11th Medium Port APO 6 (제11중형항만 군우 6)	Captain, Aircraft Commander (대위, 항공기 지휘관)	한국 부산 제6사단 예매당
		신부	Evelyn Rosser Evans	11th Medium Port APO 6 (제11중형항만 군우 6)	CAF-4, Civilian (군무원)	

인종주의의 장벽 아래에서 결혼하기

9	1948. 4.7	신랑	Louis S Wiegele	475 th Fighter Gp (제475전투단)	Capt (대위)	한국 서울 명동성당
		신부	Marjorie Ruth Warwick	Hq 80th Med Gp (제80의무부대 본부)	DAC CAF 5 (군무원)	
10	1948. 3.14	신랑	James C. Mathews	49th M.G Co.	Capt (대위)	한국 대전 APO 7 Unit 1
		신부	Marie J. Montayre	APO 7 Unit 1 (군우 7 Unit 1)	Army Service Hostess (군 종업원)	
11	1948. 4.4.	신랑	Arthur A. Borselli	216th Quartermaster APO 7 (제216보급부대 군우 7)	1st Lt (중위)	한국 서울 Chapel of the Martyrs
		신부	Genevieve R. Kiss	Special Service Section, Hq XXIV Corps, APO 235 (제24군단 특별근무대 군우 235)		
12	1948. 4.18.	신랑	John A. Rouse	25th CID APO 235 (제25군사범죄수사대 군우 235)	T/Sgt 병장	한국 서울
		신부	Verdie L. Hood	25th CID APO 235 (제25군사범죄수사대 군우 235)	CAF 4 (군무원)	
13	1948. 4.14	신랑	Ray W Baggett	USOCS, Hqs USAMGIK, Unit 2 (USOCS, 군정청 본부, Unit 2)	DAC (군무원)	한국 서울 Chapel of the Martyrs
		신부	Marry Ann Seebacher	Engrs, Hqs XXIV Corps APO 235 (제24군단 공병부, 군우 235)	DAC (군무원)	

14	1948. 3.28	신랑	Joseph A. Depuglia	54th Military Police company, APO 901 (제54 헌병중대 군우 901)	1st Lt (중위)	Chapel, University of Santo Thomas, Manila, P.I
		신부	Gloria A. Querol	455 Rizal Vigan Ilocos Sur, Philippines (필리핀 국적으로 추정)		
15	1948. 4.24	신랑	Mesick Robert A	Company "B" 42nd Engineer Construction Battalion (제42공병건설대대 B중대)	2nd Lt (소위)	KBC Chapel
		신부	Maykovich Mary Ellen	부양가족 (Dependent)		
16	1948. 4.24	신랑	William H. Jaeschke	601 st MSD (제601 MSD)	Cpl (상병)	한국 서울 반도호텔 (Bonto Chapel)
		신부	Wright Adeline B	34th Gen Hosp APO 1054 (제34종합병원 군우 1054)		
17	1948. 5.27	신랑	Francis J. Loughman	주한미군사령부 (USAFIK)	군무원 (DAC)	한국 서울
		신부	Irene M. Modos	주한미군사령부 (USAFIK)	군무원 (DAC)	
18	1948. 6.12	신랑	John A. Carmichael	Engineer Section Hq XXIV Corps, APO 235 (제24군단 본부 공병부 군우 235)	1st Lt (중위)	한국 서울 제7사단 예배당
		신부	Evelyn R. Hawkinson	Dept of Labor, USAMGK APO 235 Unit 2 (군정청 노동부 군우 235 Unit 2)	군무원 (DAC)	

인종주의의 장벽 아래에서 결혼하기

19	1948. 6.12.	신랑	Michael E. Armstrong, Jr.	USAMGIK (미군정청)	1st Lt (중위)	KBC Chapel
		신부	Helen B. Griffiths	FEC Motion Picture Division (극동사령부 영화담당국)	군무원 (Civ)	
20	1948. 6.12	신랑	John D. Huhm	315th Headquarters Intelligence Detachment (제315정보사령부)	Tec 3	한국 서울 반도호텔
		신부	Yong Cha Pai	No 32-1 3 rd St, Nam San Dong, Seoul, Korea (울 남산동 3번가 32-1)		
21	1948. 5.24	신랑	Masigat Ted	Comany A, 76 th Signal Service Battalion APO 235 (제76통신군무대대 A중대 군우 235)	S/Sgt (병장)	Palampon Leyte Phil. IS.
		신부	Gloria Sevilla			
22	1948. 7.3	신랑	Phillip K. Pyun	Hq, USAMGIK APO 235 Unit 2 (미군정청 본부 군우 235 Unit 2)	CAF-4 (군무원)	정동 제일교회
		신부	Bok Goom Kang	한국		
23	1948. 7.3	신랑	Lee Tae soon	24 th Military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Detachment (제24헌병 범죄 조사대)	Sgt (병장)	정동 제일교회
		신부	Kim Ok Cha	508 Choryang Dong, Pusan, Korea (부산 초량동 508)		
24	1948. 6.12	신랑	Caruso, Frank S.	865th AAA Auto Wprns Bn (제865 방공포대 자동무기대대)	1st Lt (중위)	한국 서울
		신부	Krall Angeline F.	USAMGIK (미군정청)	DAC CAF-5 (군무원)	

25	1948. 7.10	신랑	Dale F. Icenogle	Headquarters 31st Field Artillery Battalion (MP) (헌병 제31야전포병대대)	Sgt (병장)	제7보병사단 예비당
		신부	Jean M. Thomas	7th Inf Div (제7보병사단)	Army Hostess (군 종업원)	
26	1948. 6.12	신랑	Walter F. Hamilton Jr.	57 th Field Artillery Battalion (제57야전포병대대)	1st Lt (중위)	한국 서울
		신부	Lenore D. Lieblich	NEB USAMGIK (미군정청 중앙경제위원회)	P-3 (Economic Analyst, 경제전문가)	
27	1948. 4.28	신랑	Jack Chin	Hq Co 2d Engr Cons Gp (제2공병건설단 군우 815)	Tec Sgt (기술 병장)	서울 Chapel of Martyrs
		신부	Cynthia W. B. Kim	Korean national (한국 국적)		
28	1948. 6.30	신랑	George L. Varga	54th MP Co, APO 901 (제54헌병중대 군우 901)	S/Sgt (병장)	군수지원사령부 예비당 군우 901
		신부	Blanche E. Urschel	Hq KBC, AG Section, APO 901 (기지사령부 본부 부관부 군우 901)	DAC (군무원)	
29	1948. 7.10	신랑	Richard D. Dippold	Hq co 2d Engr Cons Gp APO 815 (제2공병건설단 군우 815)	Tec/4	한국 서울 성당
		신부	Marie Antoinette Martel	French National (프랑스 국적)		

인증주의의 장벽 아래에서 결혼하기

30	1948. 8.28	신랑	Young Pil Choo	1370 th MP Company (제1370헌병중대)	Sergeant (병장)	한국 서울 반도호텔
		신부	Eun Bong Lee	194 Pok Ah Hyong, Tong, Seoul, Korea (서울 북아현동 194번지)		
31	1948. 6.18	신랑	Frank F. Fishman	Post Engineers, Camp Seoul, APO 235 (Camp 서울 시설공병 군우 235)	Insect & Rodent Control Officer (해충 및 설치류 통제관리자)	조선호텔 예배당
		신부	Byrd Phillips McMillian	CAS-USCOCS, APO 235 (CAS-USCOCS, 군우 235)	Clerk-stenog rapher (속기사)	
32	1948. 8.7	신랑	Daniel Valentine Notestine	TFXAG-E 201, Headquarters Commandant Section, XXIV Corps, APO 235 (제24군단 사령관실 TFXAG-E 201 군우235)	Sgt (병장)	조선호텔 예배당
		신부	Carole Elizabeth Ruff	I&E Section, XXIV Corps APO 235 (제24군단 정훈부 군우 235)	상업예술가 (Commercial Artist)	
33	1948. 10.16	신랑	Gordon W. Avison, Jr.	971 st CIC Det., APO 235 (제971CIC 파견대 군우 235)	1st Lt (중위)	정동 제일교회
		신부	Norah Y.S Young	Korean Army Nurses Corps,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APO 235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간호부대 군우 235)	DAC employee CAF 3 (군무원)	

34	1948. 10.27	신랑	Soon Choo Kang	YFP-1 11 th Med Port APO 6 (YFP-1 제11중형항만 군우 6)	DAC YFP-ONE (군무원)	부산 제71병원 예배당
		신부	Yoon Soon Kawn	48 Ta Cl■■■ Ku■■■, Pusan Korea. (한국 부산시)		
35	1948. 11.10	신랑	Henry T. Loux	Headquarters XXIV corps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APO 235 (제24군단 정보참모부 군우 235)	Sgt (병장)	Camp 서빙고 예배당
		신부	Patricia T. Loux	Headquarters XXIV corps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APO 235 (제24군단 정보참모부 군우 235)	DAC (군무원)	
36	1948. 11.21	신랑	John Josep Salek	Headquarters 6 th Infantry Division, APO 6 (제6보병사단 군우 6)	Sgt 1/c (병장)	부산 제71병원 예배당
		신부	Alice Marie Graham Salek	11 th T Med Port APO 6 (제11중형항만 군우 6)	CAF-4 Civilian CAF-4 (군무원)	
37	1948. 6. 18	신랑	Maurice Robert Holt	61 ordnance group APO 901 (제61병기단 군우 901)	US Army Chaplain Major (미군 소속 군목, 소령)	
		신부	Phyllis Cogle McClain	599 th Engineer Base Dept APO 901 (제599공병부대 군우 901)	Department of the Army Civilian (군무원)	

인종주의의 장벽 아래에서 결혼하기

38	1948.1 2.1.	신랑	Oscan F. DeMeyere	Hdq Co 32 nd Inf Regt, 7 th Div, APO 7 (제7사단 제32보병연대 군우 7)	Sgt (병장)	조선호텔에 배당
		신부	Fuller, Doris J	N-1106 382 nd station on Hospital, APO 901 (제382 후송병원 군우 901)	1st Lt (중위)	

출처 : RG 338,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No. 11070, Box 81, 291 Genealogy & RACC. Box 81

